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일, 김태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4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
결)

제2차 국방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 의원)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가혹행위·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징계권자 또한 징계처분등에 대한 결과가 피해자에게도 통보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징계절차등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성폭력 및 성희롱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징계대상자의 징계처분 결과라는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과 피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익 간 비교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20627호, 2024.12.31)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2024. 3. 19.)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비용추계서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첨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 -----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